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85

발의연월일: 2021. 5. 26.

발 의 자:김교흥・김수흥・김홍걸

박찬대 • 배준영 • 배진교

양정숙 • 유동수 • 정정순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 연평균 73일의 결항과 33회의 지연운항으로 주민(1만 2천여 명)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생활의 불편이 심대하게 초래되고 있음.

이에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산업(관광)을 육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5조 및 제16조).

법률 제 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항만"을 "항만·공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항만"을 "항만·공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②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 · <u>항만</u> · 수도 등 사회간	5 <u>항만 • 공항</u>
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원) ①
는 도로・ <u>항만</u> ・수도, 그 밖에	<u>항만·공항</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	
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